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0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강승규·서천호·백종헌

김형동 • 박성민 • 김한규

이인선 • 복기왕 • 강대식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 그러나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국민 의료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전국 활동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53%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3명인 반면, 경북 1.4명, 충남 1.5명, 전남 1.7명으로 전국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아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못하여 국가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임.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국민의 의료안전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지방의 취약한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서비스 등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이에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 문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하여 국민의 료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 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안 제2조).
- 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내로 교육부장관 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국가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충청남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 또는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공주대학교 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의료인을 양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 제3조(입학정원) 교육부장관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내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학자격·수업연한·교육과정·학위의 수여와 그 밖에 의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및 비용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공공의료과정) ① 국립공주대학교의 장은 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공공의료 관련 과목,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지역공공의료과정(이하 "지역공공의료과정"이라한다)의 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공공의료과정의 선발방법과 교육과정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학비등의 지원) 국가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7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 성적기준의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② 제7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퇴학한 사람
 - 2.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9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반환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무복무) ① 제7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보건업무에 10년 동안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하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 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등으로 휴직한 경우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0조(의사 면허의 취소 요청 등)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의사가 충청남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간호사 등 보 조 인력 인건비 지원, 행정인력 고용 지원,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